

의정활동보고서

제194회 임시회(2004. 12. 21 ~ 12. 2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익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에 연이어 오늘부터 제19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동안 철저한 자료 준비와 현지활동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펼치고, 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갑신년(甲申年)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민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순수하고 울곧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의 대학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보건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도 대학만 가면 된다”는 학벌 만능주의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회풍토를 볼때, 도정을 책임져야 할 공인(公人)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의 의정과 도정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04년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의 누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을유년(乙酉年)에는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한층 풍요로워 지길 총심으로 축원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와 추운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21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哲 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사항

2. 조례공포 사항

3. 위원회 부결사항

VI. 5분 자유발언

부 록

조 록 안

01.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02.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3. 경상북도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04.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05.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6.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7.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예 산 안

01.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2.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 의 안

01.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경상북도지분
출자동의안

기 타 안

0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4회 임시회는 2004년 12월 21일 개최하여 12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1회의 특별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2월 21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4년도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 중 특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 까지 6일간 2004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 27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임원식 의원)을 청취한 후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경상북도지분출자동의안 및 2004년도국제친선교류단활동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수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4. 12. 6

라. 집회일시 : 2004. 12. 21(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4. 12. 21 ~ 12. 27(7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 (누계 67회)

○ 상임위원회 : 11회

구 분	계	의 회 운 영	기 획	행 사 정 회	교 육 경 관	농수산	산 업 관 광	건 설 소 방	특 별
금 회	11	1	1	2	1	1	2	1	2
누 계	298	31	30	46	47	31	36	31	46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7(월) 11:00 (제2차)	12.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13. 2004년도국제친선교류단활동결과보고	

나. 상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1(화) 10:00 (제1차)	01. 제195회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견 02.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1(화) 13:3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관리실·공보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1(화) 14:0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02.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2(수) 14:00 (제2차)	03.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도대학·자치행정국 소관 04.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05.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수정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2(수) 10:3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팔공산도립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0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03.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2(수) 11:0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원·농수산국 소관 02.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 경상북도지분출자동의안	원안가결 "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1(화) 11:0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안가결
2004.12.23(목) 09:30 (제2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1(화) 11:00 (제1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관	원안가결
	02.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
	03.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04.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소방본부 소관	”
	05.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06.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07.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23(목) 10:00~16:30 (제8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02.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4.12.24(금) 16:30~17:00 (제9차)	0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의결 02.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의결	원안가결 "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1 (265)	11 (264)	11 (234)	(29)	(1)	(1)	2 (2)	
조 례 안	소 계	7 (121)	7 (121)	7 (107)	(13)	(1)		
	의 회 제 안	(11)	(11)	(5)	(5)	(1)		
	도지사 제 출	6 (89)	6 (89)	6 (83)	(6)		2 (2)	
	교육감 제 출	1 (21)	1 (21)	1 (19)	(2)			
예산·결산	2 (25)	2 (25)	2 (12)	(13)				
동의·승인	1 (74)	1 (74)	1 (73)	(1)				
건의안	(10)	(10)	(9)	(1)				
결의안	(10)	(10)	(10)					
기 타 안	1 (25)	1 (24)	1 (23)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3 (268)	13 (267)	9 (123)	2 (25)	1 (74)	(10)	(10)	1 (25)	(1)	(1)	(3)
의 회 운 영	(8)	(7)	(5)				(2)		(1)		(1)
기 획	(17)	(17)	(10)		(5)	(1)		(1)			(1)
행 정 사 회	3 (76)	3 (76)	3 (50)		(24)	(1)	(1)				(1)
교 육 환 경	1 (35)	1 (35)	1 (25)		(9)			(1)			
농수산	1 (17)	1 (17)	(5)		1 (10)	(2)					
산 업 관 광	(40)	(40)	(16)		(20)	(2)	(2)				(1)
건 설 소 방	5 (20)	5 (20)	5 (11)		(6)	(2)		(1)			
특 별	2 (25)	2 (25)		2 (25)							
분회의	1 (30)	1 (30)	(1)			(2)	(5)	1 (22)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102)	(8)	1 (12)	1 (11)	(20)	1 (9)	(8)	(12)	1 (10)	(12)
의 회 운 영										
기 획	(4)				(1)		(1)			(2)
행 정 사 회	1 (10)	(5)	1 (3)	(1)	(1)					
교 육 환 경	1 (22)			(1)		1 (9)		(11)		(1)
농수산	1 (9)			(1)	(1)				1 (7)	
산 업 관 광	1 (23)		(9)	1 (3)			(7)			(4)
건 설 소 방	(31)	(3)		(5)	(17)			(1)	(3)	(2)
특 별 위 원 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8)	(98)				
의회운영						
기 획	(4)	(4)				
행정사회	(9)	(9)				
교육환경	(21)	(21)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22)	(22)				
건설소방	(31)	(31)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4.12. 8)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12.14)
경상북도교육감 (2004.12.13)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2004.12.13)
경상북도지사 (2004.12.13)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건설소방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3)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건설소방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3)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3)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3)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건설소방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4)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4)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경상북도 지분출자동의안	농수산 (2004.12.14)
경상북도지사 (2004.12.15)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 (2004.12.15)
경상북도지사 (2004.12.20)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12.20)
경상북도지사 (2004.12.20)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12.20)

2. 위원회 부결사항

발 의 자 (제 출 일)	건 명	소관위원회 (부 결 일)
김정기의원 외16인 (2004. 9. 1)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 (2004. 12. 7)

VI. 5분 자유발언

□ 제2차 본회의(2004. 12. 27)

임원식 의원 (울진군, 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결산을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6일 선배의원의 5분 질문에 대하여 인내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채희영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 관하여 반박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내용 중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체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발언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발언하신 선배의원께서는 슬기롭게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우리 모두 마무리 잘하고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도민을 위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 : 7건
- 예 산 안 : 2건
- 동 의 안 : 1건
- 기 타 안 : 1건

【조례안 : 7건】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단,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5”를 “2.5”로 하고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를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을 “학교장 (학·총장)이 추천한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5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p> <p>7. 제3조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u>중·고등학생</u></p>	<p>제5조(지원대상) ①</p> <p>7. <u>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u> 단,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u>적용한다.</u></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③ <u>2.5</u> <u>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u></p>
<p>제11조(장학금 지급) ①제5조제7호에 의한 장학생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u>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u>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p>	<p>제11조(장학금 지급) ① <u>학교장(학·총장) 이 추천한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u></p>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명칭 및 위치』란중 “양포초등학교계원분교장병설유치원, 두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쌍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경산유치원,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경산유치원	경산시 삼풍동 504-5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시 옥산동 산40-15

[별표2]의 『명칭 및 위치』란중 “자명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계원분교장, 두릉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조문분교장, 안평초등학교도옥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창포초등학교”란 다음에 “포항장흥초등학교, 포항장원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포항장흥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장성동구획정리지구 61B 1L
포항장원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장성서구획정리지구 48B 1L

“성암초등학교”란 다음에 “옥곡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옥곡초등학교	경산시 옥곡동 827

“장곡초등학교”란 다음에 “대교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대교초등학교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산18-1

[별표3]의 『명칭 및 위치』란중 “현서중학교”란 다음에 “진보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진보중학교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62

[별표4]의 『명칭 및 위치』란중 “산북정보고등학교”란을 삭제하고 “장성고등학교”와 “진보종합고등학교”를 각각 “포항장성고등학교”와 “진보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등에 대비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제”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장하거나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일반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상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도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기반재난은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도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기반재난은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도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자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 종합상황실 근무자(24시간 3교대 근무) 및

재난 담당부서의 공무원(소관부서에서 주간근무)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4, 별표5, 별표 6과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도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

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도간 및 도와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도의 담당요원간 및 도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 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관련 도 안전관리계획의 도 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총괄

5. 도에 설치된 기반재난과 관련한 대책본부 구성·운영 주도

6.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장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도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경상북도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도지사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경상북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재난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를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로 한다.

제5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구역으로부터 1시간이내의 타 지역 거주자도 임용 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중 "의소대별 정원은 30명, 여성대별 정원은 20명으로" 를 "의 소대 및 여성대별 정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화재·구조·구급" 을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중 "소방업무"를 "소방활동 및 기타 재난업무"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소방업무로 인하여"를 "소방업무(교육, 훈련포함) 및 기타 재난현장업무 수행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방법 제 86조 내지 제91조의</u> 규정에 의한 <u>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 및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소방기본법 제 37조 내지 제39조</u>----- ----- ----- ----- -----</p>
<p>제5조(조직기준) 의소대, 여성대 및 지역대의 대원은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지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한다</p>	<p>제5조(조직기준) ----- ----- ----- ----- 다만, 관할구역으로부터 1시간이내의 타 지역 거주자도 임용할 수 있다</p>
<p>제9조(대의 정원)① 시와 읍지역의 경우 <u>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별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지역대별 정원은 20명으로 하고, 면지역의 경우는</u> <u>의소대별 정원은 30명, 여성대별 정원은 20명으로 한다</u></p>	<p>제9조(대의 정원)① ----- ----- ----- ----- <u>의소대 및 여성대별 정원은 30명 내외로 -----</u></p>

현 행	개 정(안)
<p>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등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소방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p>	<p>제16조(복무의무) ① ----- ----- -----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3조(출동수당) ①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출동수당) ① ----- 소방 활동 및 기타 재난업무 ----- ----- ----- ----- -----</p>
<p>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p>	<p>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① ----- 소방업무(교육·훈련 포함) 및 기타 재난현장업무 수행중 ----- -----</p>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소속 학교장(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3.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시장·군수·소방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이 있는 대원의 자녀

제4조 제1항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4.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만, 고등학생은 3년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은자와 타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5조 제2항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4:1"을 "3:1"로

한다

제6조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60"을 "120"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u>국·공·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u>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 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국·공·사립고등학교</u> ----- ----- -----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교과 성취도 환산점수(수-5우-4, 미-3, 양-2, 가-1)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 총점의 평균이 3 이상이거나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자</u> 다만, 신입생은 입학고사 총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u>100분의 50이내인 자</u> 2. (생략) 3. <u>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도지사이상 표창수상자)이 있는 대원의 자녀</u> 	<p>제2조(장학생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품행이 단정하고 소속 학교장(학장, 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자</u> 2. (현행과 같음) 3. <u>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시장·군수·소방서장이상 표창수상자)이 있는 대원의 자녀</u>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선발) ①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군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p> <p>1~3호(생략)</p> <p>4. <u>유공표창중 도지사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u>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받는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u></p>	<p>제4조(선발) ①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p> <p>1~3호(현행과 같음)</p> <p>4. <u>유공표창중 소방서장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u></p> <p>② ----- ----- ----- 다만, <u>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u></p>
<p>제5조(장학생의 정원)①(생략)</p> <p>② 장학생은 <u>중·고등학생과 대학</u>생의 비율이 <u>4:1</u>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장학생의 정원)①(현행과 같음)</p> <p>② ----- <u>고등학생</u> ----- ----- <u>3:1</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장학금액) <u>중·고등학생</u>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u>60만원</u>으로 한다</p>	<p>제6조(장학금액) <u>고등학생</u> ----- ----- ----- ----- 120 -----</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1~2호(생략)</p> <p>3. <u>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교과 성취도 환산점수(수-5, 우-4, 미-3, 양-2, 가-1)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총점의 평균이 3미만 또는 평균평점이 B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u></p>	<p>제8조(지급의 정지)①(현행과 같음)</p> <p>1~2호(현행과 같음)</p> <p>3. <u>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u></p>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회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하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소량위험물(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

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15.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16.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17.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1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3항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19.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규칙 별표 6 I(안전거리), II(보유공지), IX(방유제)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된 실에서 할 것
 -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7.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8.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9.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 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13.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③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의 탱크 【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
40리터 이하	1.0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1.2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1.6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2.0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2.3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2.6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	3.2밀리미터 이상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바.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사.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차.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지하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및 차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바.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이동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나.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다.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 라.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 마.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의할 것
- 바.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사.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 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 아.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자.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 차.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 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 타.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

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 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나. 공지의 너비
다.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라. 3m 이상
마.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바. 4m 이상
사.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아.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의 특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등을 판단하여,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 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2 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4.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제3항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예산안 : 2건】

-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일반회계 (2,363,800,000천원) : 수정없음
- 특별회계 (627,514,000천원) : 수정없음

세출예산 : 원안가결

- 일반회계 (2,363,800,000천원) : 수정없음
- 특별회계 (627,514,000천원) : 수정없음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세입예산 : 원안가결

○ 특별회계 (2,052,617,000천원) : 수정없음

세출예산 : 원안가결

○ 특별회계 (2,052,617,000천원) : 수정없음

【동의안 : 1건】

-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경상북도
지분출자동의안

「포항신항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 경상북도지분참여출자동의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7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
경상북도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면
- 사업규모

구 분	사 업 량	비 고
컨테이너부두	1,000m × 600m	· 컨테이너 2만톤급 4선석 · 야적장 600,000㎡

- 건설기간 : 2005년~2008년(4년간)
- 총사업비 : 3,316억원 (자기자본689 타인자본1,279 정부지원1,348)
- 시행주체 : 포항영일신항만(주)
- 사업방법 : B.T.O (Build Transfer Operate)
 - ※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 후 법인이 50년간(2009년~2059년)
항만 운영권을 가짐.

□ 그간 추진상황

- '02. 2. 7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림산업이 포항시에 지분 (10%) 출자건의 ⇒ 포항시 참여의향 표시
- '04. 3. 15 : 포항시 지분 참여 의향서 제출 ⇒ (가칭)포항영일신항만(주)
- '04. 3. 15 : 포항시에서 경상북도 민자지분 참여 협조 요청
- '04. 3. 17 : 대림산업에서 경상북도민자 지분 참여 요청
- '04. 3. 18 : 경상북도 지분 참여 의향서 제출 ⇒ (가칭)포항영일신항만(주)
- '04. 4. 26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04. 5. 25 : 재정경제부 투자계획 최종승인
- '04. 5. 29 : 포항영일신항만(주) 법인설립
- '04. 6. 10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서명식
- '04. 9. 18 : 영일만신항 물동량조사 용역완료
- '04. 10. 4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 (제2834호)
- '04. 10. 29 : 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 '04. 11. 12 : 포항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04. 11. 17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04. 11. 26 : 포항시 지분 참여 출자 동의(안) 시의회 심의 의결

□ 지분출자계획

- 총사업비 : 3,316억원 (자기자본689, 타인자본1,279, 정부지원1,348)
- 경상북도 출자액 : 68.9억원 (자기자본 689억원의 10%)
 - 2005 : 34.4 2006 : 15.0 2007 : 19.5

○ 출자사별 지분율(현재)

(단위 : %, 억원)

출자사명	지분율	출자액
대림산업	28	192.9
코오롱건설	17	117.1
현대산업개발	15	103.3
한라건설	15	103.3
두산건설	12	82.7
포스코건설	9	62
홍우건설	4	27.6
계	100	688.9

※ 경상북도, 포항시 각10% 지분 출자시 기 출자사 지분율 및 출자액 조정

□ 사업 참여목적

- 포항영일만신항을 21세기 환동해권 국제교역의 중심항만으로 개발
 - 대구·경북권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항만건설 및 운영에 따른 고용, 생산유발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배후 산업단지 개발(180만평) 촉진 및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 담당

□ 출자에 따른 권리

- 100분의 10이상 출자자에 인정되는 주주권
 -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6조)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권리(상법 제467조)

-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85조)
-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539조)
-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 (상법 제466조)
- 회사의 해산 청구권 (상법 제520조)
- 회사의 정리개시 신청권 (회사정리법 제30조)
- 기타
 - 포항영일신항만(주)의 비상임 이사 1명 추천
 - 출자에 대한 주주로서의 영업이익 배당
 - 기타 관련법에 의한 권리행사

□ 출자 타당성 검토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출자 타당성 검토)
- 검토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검토항목
 1. 포항영일만신항(민간투자사업 1-1단계)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재무타당성(사업별 수지) 분석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발췌]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포항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천TEU)

구 분	수 입	수 출	합 계
2009년	170	226	396
2011년	217	314	531
2015년	275	366	641
2020년	368	491	859

※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길이 20피트, 높이8피트, 폭8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 포항영일만신항 적정개발 규모산정

(단위 : 천TEU)

구 분	2009년	2011년	2015년	2020년
물 동 량	396	531	641	859
선석당 표준능력	107	107	107	107
소 요 선 석	2	4	6	8

※ 개항초기 물동량유치 불확실성으로 초기년도에는 우선 2선석만 운영하고 물동량 추이에 따라 선석 확대

○ 개발사업의 적정성 검토의견

-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은 2만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 개발 사업으로 물동량 전망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항만산업 및 항만의존산업관련 포항경제 유발효과는 8.3%
- 포항시 총생산(GR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내외로 6,750억원 증가
(2002년 포항시 총생산액 13조 4,979억원 기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제세공과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상총액	불변총액	비 고	부과주체
법인세할 주민세	143,489	27,959	법인세액의 10%	포항시
균등할 주민세	123.2	25	자본금100억 이상 연 500,000원	"
재산할 사업소세	256	40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할 사업소세	6,682	1,356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자동차세	720	100		"
면허세	73	12		경상북도
계	151,343.2	29,492		

※ 경상총액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50년 후의 화폐 가치

※ 불변총액 : 현재의 화폐 가치

※ 상기 제세공과금은 포항영일신항만(주)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포항영일만신항의 컨테이너부두 4선석의 개발로 생산유발효과 5,140억원, 임금유발효과 1,076억원, 고용유발효과 8,894명, 포항시 인구의 4.3%(22,200명)증가 추정

4. 사업별 수지분석

○ 10% 출자시의 사업성

(단위 : 억원, 경상가격기준)

구 분	총 액	포항시/경상북도(10%)
출자 예정액	689	68.9
배당수입 예상액	36,518	3,652
ROE(물가상승률4% 가정 시)	12.42%	12.42%

⇒ 개항 후 최장 14년간 목표물량 부족시, 정부에서 재정 보전
(최초 5년 90%, 6~10년 85%, 11~14년 80%)

※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 기대수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 사업수지분석 검토의견

- 출자예정액(68.9억원)을 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수익 또는 타 사업에 출자할 경우와 비교할 때 본 사업의 투자수익률과 자기자본 기대수익률(ROE)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단위 : 명)

구 분	운영 조직	소요 인력	비 고
영일신항만(주)	1실, 2본부, 7팀	104	
용역 결과(KMI)	2본부 8팀	120	

※ 개항(2009년)초 컨테이너 2선석 운영기준

○ 소요 인력의 수요판단 검토의견

- 본 사업의 조직 및 운영인력은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구상하는 조직의 인력보다 다소 많은 120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물동량의 변동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운영부서 인원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 영일만신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 개발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고용 창출, 인구증가 등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명목수익 기준으로 12.42%로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2005년 본예산 반영 : 2004. 12월
- 2005년도 출자금 출자 : 2005. 3월

경상북도 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2004 - 1	의안제목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출자 여부 심의
의결안건		의결사항	
<p>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의 경상북도 지분참여를 위한 출자 여부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비 : 3,316억원 - 경상북도 출자액 : 68.9억원 (자기자본 689억원의 10%) [2005:34.4 2006:15.0 2007:19.5] 		<p>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에 출자자로서 참여기로 의결함.</p>	
<p>위와 같이 심의 · 의결 함.</p> <p>2004. 11. 17.</p>			
위원장	김용대	위원	손규삼
(행정부지사)		(경상북도의원)	
위원	김치행	위원	이원만
(기획관리실장)		(경상북도의원)	
위원	주낙영	위원	이인근
(경제통상실장)		(포항1대학교수)	
위원	임광원	위원	김종열
(농수산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위원	김정호	위원	권유일
(건설도시국장)		(포항항만물류협회장)	

【기 타 안 : 1건】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괄

1. 감사기간 : 2004.11.21 ~ 11.30(10일간)

2. 대상기관 : 66개기관(경상북도 33, 경상북도교육청33) ※ 현지확인 13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합 계	299	100	199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6	4	2
기 획	소 계	32	16	16
	공보관실	2	-	2
	감사관실	2	1	1
	기획관리실	6	2	4
	공무원교육원	4	2	2
	지방의료원(3)	14	10	4
	경북개발공사	4	1	3
행정사회	소 계	25	9	16
	자치행정국	9	2	7
	사회복지여성국	6	2	4
	경도대학	4	2	2
	자연환경연수원	6	3	3
교육환경	소 계	30	15	15
	보건환경산림국	8	4	4
	보건환경연구원	2	1	1
	산림환경연구소	2	2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1	-	1
	팔공산도립공원	1	-	1
	도교육청(10)	7	3	4
	시·군교육청(23)	9	5	4

감사위원회	부서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농수산	소 계	25	12	13
	농수산국	15	8	7
	농업기술원	10	4	6
산업관광	소 계	141	37	104
	경제통상실	24	7	17
	문화체육관광국	27	7	20
	신용보증재단	16	4	12
	중소기업지원센터	16	3	13
	한국국학진흥원	6	3	3
	생활체육협의회	8	1	7
	경북통상	19	-	19
	문화재연구원	12	2	10
	테크노파크	13	10	3
건설소방	소 계	40	7	33
	건설도시국	14	2	12
	종합건설사업소	12	3	9
	소방본부및소방서	14	2	12

의정활동보고서(제194회 임시회)

2005. 1 인쇄 / 2005.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